

"청렴은 당연하게! 전북교육은 당당하게!"



## 전라북도교육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[안내] 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

1. 관련: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-9065(2020.11.10.)
2.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제기되고 있습니다.
3.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  
(“표시” 및 “광고”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참조)  
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오니,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평생교육시설에서 [붙임]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. 끝.

### 전라북도교육감



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

★주무관

김수광

평생교육담당 사 이상곤  
무관

미래인재과장

전결

2020.11.11.

변완섭

협조자

시행 미래인재과-20490 (2020. 11. 11.) 접수 교육지원과-13414 (2020. 11. 11.)

우 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/ <http://jbe.go.kr>

전화 063-239-3439 /전송 063-220-9412 / [rlatnrhkd@jbedu.kr](mailto:rlatnrhkd@jbedu.kr) / 비공개(7)

"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+"